



제339회 임시회
2015. 4. 23.(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박봉순 의원 등 7명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14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해 지역 경제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과제를 발굴, 선정, 기획, 자문하기 위한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미래과제의 발굴·선정·조사·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미래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 (안 제3조)
- 나. 지원단의 기능 (안 제4조)
 - 충북 미래과제 발굴, 선정, 사업기획, 조사, 용역수행, 자문 등
- 다. 지원단 구성 (안 제5조)
 - 단장: 미래전략기획단 업무 관장 부지사
 - 단원: 산학연·관 전문가, 도내 소재 정부 기관단체 담당자 등(50명 이내)
 - 미래과제 기획화를 위한 과제별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 라. 사업기획 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단원, 외부전문가와의 수의계약 (안 제10조)
- 마. 단원, 외부전문가, 태스크포스팀원에 대한 기획연구비, 자문료 등 필요 경비 지급 (안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충북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획 과제를 발굴·선정·조사·자문 등 일련의 역할 수행을 위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올해 1월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의 효율적 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임.
-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미래과제’의 의미를 ‘지역경제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기획과제로 정의하였고,
 - 안 제4조의 지원단의 기능은 미래과제를 직접 발굴하거나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 중 미래과제를 선정·자문하며, 선정된 미래과제의 현실화를 위해 사업기획, 조사 및 용역을 수행토록 명시하였음.
 - 안 제5조 지원단 구성에서는 단장을 미래전략기획단 업무 관장 부지사(現, 정무부지사)로 하고, 단원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관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특히 과제별로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여 과제 기획단계에서의 전문성 및 집중도를 높이고자 함.
 - 안 제9, 10조는 지원단 및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또한 용역수행이 필요한 미래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용역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 안 제11조는 단원, 외부전문가, 태스크포스팀원의 회의참석 수당·여비와

미래과제의 제안·기획·조사·자문 역할수행에 대한 필요 경비의 지급 근거를 명시함.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 내 담당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성안된 것으로, 내용 및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